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 손실보상금 우선지급제도 도입〉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05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용기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8. 6.
3. 회부연월일 : 2025. 8.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손실보상 완료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소방대 등이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가구·세대의 주거시설 또는 건축물의 출입문 등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파괴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긴급 수리·정비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평온한 생활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주거시설이 파괴·손상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전에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방 손실보상금 우선지급제도 도입

개정안은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주거 시설이 파괴·손상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손실보상 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경우 손실을 입은 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소방 손실보상금 우선지급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 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 ⑤ (생략) <u><신설></u>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우선 보상할 수 있다.</u> <u>1.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주거시설이 파</u>

현행	개정안
	<u>괴·손상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2. 그 밖에 제1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경우 손실을 입은 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재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적법한 소방업무·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소방대원의 원활한 현장활동을 독려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손실보상제도(이하 “소방 손실보상제도”라 함)를 운영하고 있음(제49조의2¹⁾).

1)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중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④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소방 손실보상 제도 개요>

□ 필요성

- 소방업무·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소방대원의 원활한 현장활동**을 통해 **국민 생명·재산 보호**

□ 관계 규정

-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49조의2
- 「소방기본법 시행령」(“시행령”) 제11조부터 제17조 및 제17조의2·제18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시행규칙”) 제14조
-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등

□ 손실보상 대상 소방업무·소방활동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소방기본법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2023.8.16.>

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3.8.16.>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소방기본법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손실보상 인용 요건**

- 소방의 직무집행이 적법할 것
- 직무집행과 손실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 청구인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것
- 청구인에게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없을 것
- 재산상 또는 생명·신체(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중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상의 손실에 관한 청구일 것
-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내에 청구할 것

□ **손실보상 재원**

- 각 시도 예산 ※ 2021년부터 시·도에 소방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운영 중

(자료: 소방청)

현행법상 소방손실보상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소방손실보상금 지급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제49조의2제1항) 소방보상심의위원회는 사건 발생 등 필요시 구성·운영하고 목적 달성시 해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제49조의2제3항).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소방공무원 3명만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음(시행령 제13조제2항2).

<소방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요>

- 근거
 - 「소방기본법」 제49조의 2(손실보상)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손실보상)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소방청훈령 361호)
- 목적
 - 적법한 소방업무 수행 중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원의 부담을 경감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 유도
 - 필요 시 소방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보상
 - 적법한 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
- 구성 및 운영
 - 사건 발생 등 필요시 구성·운영, 목적 달성시 해산
 - 위원장 1인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
 - ※ 100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소방공무원 3명으로만 구성
 - 위원 과반수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
 - 위원 자격요건
 1. 소속 소방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자료: 소방청)

2)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라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1. 소속 소방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보상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 2. 6.>

⑤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

한편, 현행법은 소방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³⁾,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연도별 평균 청구 건수는 약 129건이나, 손실보상금 청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한편, 실제로 소방손실보상 청구일부터 소방손실보상금 지급일까지 소요된 기간의 평균은 약 36.243일로 나타남.

<소방손실보상 청구 건수 및 평균 소요 일수>

(단위: 건, 일)

연 도	청구건수	인용건수	평균 소요 일수*	비고
2021	104	63	28.730 일	
2022	114	67	36.388 일	
2023	145	104	32.346 일	
2024	142	108	45.342 일	
2025(6.30 현재)	69	66	38.409 일	
합계	574	408		
평균	128.6**		36.243*** 일	

* 평균일수는 해당 연도에 접수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걸린 평균일수를 의미함

** 청구건수 평균 계산 시, 2025년도는 6월 말까지 청구된 건수에 비례해서 12월 말까지 청구가 접수되었다는 가정 하에 계산

*** 2021년부터 매년 평균으로 처리
(자료: 소방청)

3) 소방손실보상금 처리 절차 및 기간은 다음과 같음: 접수한 날부터 3주 이내 부의, 부의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위원회 개의,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통지, 보상금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소방손실보상액 결정·지급 절차>

재난 발생 손실 발생	개시	사실 조사	통보
현장 활동	⇒ 보상금 청구서 접수	⇒ 본부 이송 사실조사 확인서 등 작성 및 검토	⇒ 손실보상 절차 개시 사실 등 통보
소방대	청구인 → 소방서	현장지휘관	본부 → 청구인
	접수한 때 개시	관련 자료 일체 제출	접수한 날 10일 이내 (훈령)
부의 (간사)	개의 (위원장)	통지	지급
보상위원회 구성 심사 부의	⇒ 보상위원회 개의 심사	⇒ 결정 내역 통지	⇒ 보상금 지급 (예금계좌입금)
본부(담당관)	본부	본부 → 청구인	본부 → 청구인
접수한 날 3주 이내 (훈령)	심사 부의 접수한 날 15일 이내 (훈령)	<u>결정일부터</u> 10일 이내 (시행령)	<u>통지일부터</u> 30일 이내 (시행령)

(자료: 소방청)

개정안은 ①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주거시설이 파괴·손상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② 손실보상 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경우 손실을 입은 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 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우선 보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개정안의 취지는 손실보상 완료 시 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정당한 소방업무·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국민이 훼손된 시설을 긴급히 수리하거나 정비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손실보상금을 미리 지급하여,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평온한 생활을 저해할 정도의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는 빠른 보상을 통해 국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다만, 소방손실보상금 선지급 제도 도입 여부는 동 제도 도입의 타당성, 재원 확보 가능성, 현행 소방손실보상제도의 보완을 통한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소방손실보상금 선지급 제도 도입 시의 효과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소방손실보상 제도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21년도 이후의 소방손실보상 통계에 따르면 소방손실보상 청구일 부터 지급일까지 평균 36.2일이 소요되고, 총 574건 중 100만원 이상인 청구 건은 108건(18.8%)이고 100만원 미만은 466건(81.2%)로 나타남.

특히, 100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소방공무원 3명으로 소

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 사건의 80% 이상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평균 36.2일보다 신속하게 해당 사건을 처리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⁴⁾.

따라서 소방손실보상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 개선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소방손실보상 평균 청구액>

(단위: 원, 건)

연 도	1건당 평균 청구액	100만원 이상 청구 건수	비 고
2021	548,032	14	
2022	3,596,963	18	펜션화재
2023	2,048,511	27	골프장그린훼손
2024	1,617,118	34	공장화재 굴착기파손
2025(6.30 현재)	1,046,389	15	빌라화재
합계		108	

(자료: 소방청)

둘째, 소방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위한 재원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현행 소방손실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음. 개정안은 선지급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을 제시하

4) 그 밖에 소방청은 그 동안 손실보상청구를 한 내역 중 긴급 수리·정비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물이 파손·훼손된 경우는 찾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함.

고 있으나, 동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제67조제1항)⁵⁾.

따라서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구체화·명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재난관리기금 개요>

- (적립주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법적근거) 「재난안전법」 제67조, 제68조
- (목적·용도) 지자체가 수행하는 재난관리* 소요 비용 중당(\$67①)
- (법정적립액^{매년 최저적립액})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액 3년 평균액의 **1%**
- (의무예치금액)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5%** 이상
- (사용가능금액)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이자 포함)

※ 단,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5배 초과** 피해 발생 시, **의무예치금액의 일부 사용 가능**

□ 재난관리기금 용도

- (공공분야)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이 가능

사 용 불 가	■ 확정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 단, 재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는 사용 가능
------------------	--

- (민간분야) 원칙적으로 사유시설 등 민간분야의 재난관리 활동에 드는 비용의 중당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

사 용 가 능	■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인 경우이고 ■ 소유자·점유자 불명확 혹은 명확하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

- (사용특례) ①코로나-19 관련 재난관리, ②20년 호우·태풍 피해복구, ③의사집단 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유지 목적에 사용가능(令\$75조의2)

(자료: 행정안전부)

셋째, 개정안의 입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개정안은 소방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가능한 요건 중 하나로 “일반적인 손실보상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경우 손실을 입은 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평온한 생활 침해’의 개념은 주관적이고 그 정도가 다양하므로, 지원의 형평성과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지급 요건을 보다 구체적·한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음으로, 선지급금을 회수해야할 경우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임.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방손실보상금 지급은 반드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실제 보상액은 손실보상 청구액 대비 50.3% 수준임.

따라서 손실보상위원회의 의결 결과 손실보상금 지급이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초과해서 선지급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⁶⁾.

6) 예를 들면, 손실보상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불수용으로 나올 경우, 선지급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또는 절차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 등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소방손실보상 청구 금액 및 보상금액 차이>

(단위: 원, %)

연 도	청구금액 (A)	평균 청구액 (청구액/청구건)	보상금액 (B)	차이 금액 (A-B)	청구액 대비 보상액 비율 (B/A)
2021	56,995,280	548,032	42,498,860	14,496,420	74.6%
2022	410,053,766	3,596,963	44,487,090	365,566,676	10.8%
2023	297,034,126	2,048,511	113,864,920	183,169,206	38.3%
2024	229,630,685	1,617,118	133,786,975	95,843,710	58.3%
2025 (6.30 현재)	72,200,810	1,046,389	50,087,670	22,113,140	69.4%
평균					50.3%

(자료: 소방청)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전에 손실보상금 이외의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 개정 취지는 공감하나,

최근 5년간 손실보상 청구건수 중 100만원 미만 소액 청구가 전체의 81.2%를 차지하고 있어, 이 경우 소속 소방공무원 심의만으로도 신속한 보상 처리가 가능하고,

또한 소방손실보상 예산의 경우 시·도 소방특별회계 내 예산에서 이미 편성하고 있어 재난관리기금 사용보다는 소방특별회계 예산 사용이 더 타당할 것이며, 실제 손실보상 지급 사례에서 손실보상 청구액 대비 확정액이 약 50% 수준⁷⁾에 불과하여 환수 과정에서 갈등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청구를 기각·각하한 경우에도 환수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소방활동으로 인해 파괴·손상된 주거 시설에 대한 손실보상은 재난관리(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긴급한 안전조치라고도 보기 어려우며, 재난관리기금의 민간 분야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8)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한 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7) 소방손실보상 청구 금액 및 보상금액 차이

(단위: 원, %)

연 도	청구금액(A)	보상금액(B)	차이 금액(A-B)	비율(A/B)
2021	56,995,280	42,498,860	14,496,420	74.6%
2022	410,053,766	44,487,090	365,566,676	10.8%
2023	297,034,126	113,864,920	183,169,206	38.3%
2024	229,630,685	133,786,975	95,843,710	58.3%
2025(6.30 현재)	72,200,810	50,087,670	22,113,140	69.4%
평균				50.3%

(자료: 소방청)

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 1

손실보상 예산 및 집행 현황(2023년 ~ 2025년)

구 분	2023년 예산	2023년 집행	2024년 예산	2024년집행	2025년 예산
서울	20,000,000	15,586,530	40,000,000	40,000,000	20,000,000
부산	10,000,000	6,157,600	10,000,000	1,395,000	10,000,000
대구	22,000,000	990,000	27,000,000	990,000	18,000,000
인천	19,800,000	4,322,950	18,000,000	11,453,862	39,800,000
광주	10,000,000	-	10,000,000	-	30,000,000
대전	5,000,000	4,820,000	5,000,000	1,554,000	5,000,000
울산	5,000,000	920,000	5,000,000	-	5,000,000
세종	5,000,000	1,668,700	5,000,000	-	5,000,000
경기	85,000,000	55,207,090	36,400,000	24,841,900	25,000,000
강원	12,000,000	8,773,000	6,000,000	2,015,000	5,500,000
충북	12,000,000	-	12,000,000	1,191,713	12,000,000
충남	5,000,000	750,000	5,000,000	2,545,000	5,000,000
경북	15,000,000	6,507,000	40,000,000	29,077,000	5,000,000
경남	5,000,000	1,356,000	5,000,000	5,955,000	5,000,000
전북	10,000,000	1,500,000	5,000,000	1,531,000	5,000,000
전남	20,000,000	-	20,000,000	9,277,500	20,000,000
제주	5,000,000	4,280,000	5,000,000	100,000	5,000,000
창원	10,000,000	1,026,050	5,000,000	1,860,000	5,000,000
합계	275,800,000	113,864,920	259,400,000	133,786,975	225,300,000

(자료: 소방청)

참고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개최 건수	청구 건수	보상 건수	미보상 건수	개최 건수	청구 건수	보상 건수	미보상 건수	개최 건수	청구 건수	보상 건수	미보상 건수
서울	17	48	4	13	23	53	16	7	28	48	14	14
부산	2	2	2		6	6	6		9	9	8	1
대구		4			1	5	1			6		
인천		6	6			4	4			4	4	
광주	경미건	1	1									
대전	2		2		5	6	5		3	3	3	
울산					2	1	1	1		2		
세종										1		
경기	1	15	1		1	10	1		1	20	1	
강원	2	3	1	1	3	4	1	2	3	8	2	1
충북		2	2	1		2	2			4	4	
충남		5			1	2	1		1	1	-	1
경북					5	5	5		1	2	1	
경남					1	1	1		2	2	2	
전북	2	2	1	1	2	2	1	1	1	1	1	
전남										1		
제주						2				2		
창원						1						
합계	26	88	20	16	50	104	45	11	49	114	40	17

(자료: 소방청)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6.30. 기준)			
	개최 건수	청구 건수	보상 건수	미보상 건수	개최 건수	청구 건수	보상 건수	미보상 건수	개최 건수	청구 건수	보상 건수	미보상 건수
서울	39	61	23	16	31	49	26	5	19	15	12	7
부산	9	9	9		3	2	3		2	2	2	
대구	1		1			1			1	1	1	
인천	1	9	8	1	6	6	4	2	3	2	3	
광주									7	7	7	
대전	6	6	6		3	3	3		1		1	
울산		4										
세종	1	1	1		1	1		1	1	1	1	
경기	4	32	6	3	16	40	30	8	7	24	23	2
강원	1	7	1			3			1	1	1	1
충북	1	2	1	1	3	3	3		1	4	4	
충남		1			4	4	4					
경북	3	4	3		2	1	2		4	3	2	2
경남	2	3	3		6	14	14		2	3	3	
전북	1	1	1		5	5	3	2	1	1	1	
전남					3	5	4	1	1	2	2	
제주	1	3	1		1	2	1		2	1		2
창원		2			3	3	3		2	2	2	
합계	70	145	64	21	87	142	100	19	55	69	66	14